

의안번호	제 43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

발 의 자	윤 홍 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8월 19일

#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

( 윤홍창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43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8월 19일

발 의 자 : 윤홍창·정영수·이종욱·  
이숙애·임헌경·최광욱·  
임병운 의원

## 1. 제정이유

「인성교육진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(안 제3조)
- 나.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인성교육 운영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학교의 장은 매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바.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사.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명시함

(안 제9조)

아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 함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6. 7. 15. ~ 8. 3.(20일간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성교육”이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바람직한 성품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“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
5. 인성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
6. 인성교육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7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·가정·지방자치단체·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인성교육의 평가 등)** ① 교육감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성교육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학교의 인성교육 등)**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)**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협의회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, 교육국장,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**제9조(협의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,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

회를 소집한다.

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)**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교원 연수)**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인성교육진흥법

제6조(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
2. 인성교육의 홍보
3.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
4. 인성교육 핵심 가치·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 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

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)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·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·가정·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□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

제3조(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2.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·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
5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(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.

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,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.

제12조(인성교육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·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시·도인성교육진흥협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 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유아“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“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